



유튜브에서 **신광은 형사법**을 검색하세요

2025 미래인재 경찰학원

신광은

형소법

수사/증거

1

신광은 형사법 / 형법 / 형소법 | 신과함께

cafe.naver.com/withske

경찰채용 · 승진 · 간부 / 법원직 / 검찰 · 교정직
/ 해경 / 소방간부

-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신광은 형사소송법 I(수사·증거 편)」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I)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사소송법 I(수사·증거 편)」을 출간하면서 기존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수사와 증거』파트만 발췌하여 형사법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채용 시험의 맞춤형 교재가 되도록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I(수사·증거 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법률 및 수사준칙 등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교정직·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4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Tip 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주의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I (수사·증거 편)」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

편저자 신광은

PART 1 수사

제1장 수사 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 I 수사의 의의 2
- II 수사의 구조 3
- III 수사의 조건 4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1

- I 수사기관 11
- II 피의자 25

제3절 수사의 개시 27

- I 수사의 단서 27
- II 불심검문 28
- III 변사자의 검시 33
- IV 고소 35
- V 고발 56
- VI 자수 59
- VII 수사의 개시 62

제4절 임의수사 63

- I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3
- II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6
- III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69
- IV 임의수사의 방법 73

제5절 체포와 구속 90

- I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0
- II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1
- III 긴급체포 98
- IV 현행범인 체포 106
- V 구속 113
- VI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35
- VII 보석 144
- VIII 구속의 집행정지 153

- IX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면실효) 156
- X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61

제6절 압수·수색·검증 172

- I 압수·수색 172
- II 수사상의 검증 218
- III 수사상의 감정 222
- IV 통신제한조치 224
- V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32

제2장 수사의 종결 241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41

- I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41
- II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50
- III 압수물의 환부 25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52

- I 검찰항고 252
- II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53
- III 헌법소원 26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7

- I 의의 267
- II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67
- III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68

PART 2 증거

제1장 증거	272
제1절 증거법 일반	272
I 증거의 의의	272
II 증거의 종류	272
III 증거능력과 증명력	27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77
I 증거재판주의	277
II 거증책임	288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299
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9
II 자백배제법칙	310
III 전문법칙	320
IV 전문법칙 관련 문제	371
V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384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393
I 자유심증주의	393
II 탄핵증거	406
III 자백의 보강법칙	410
IV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20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中

〈꿈이 있기에〉 - 김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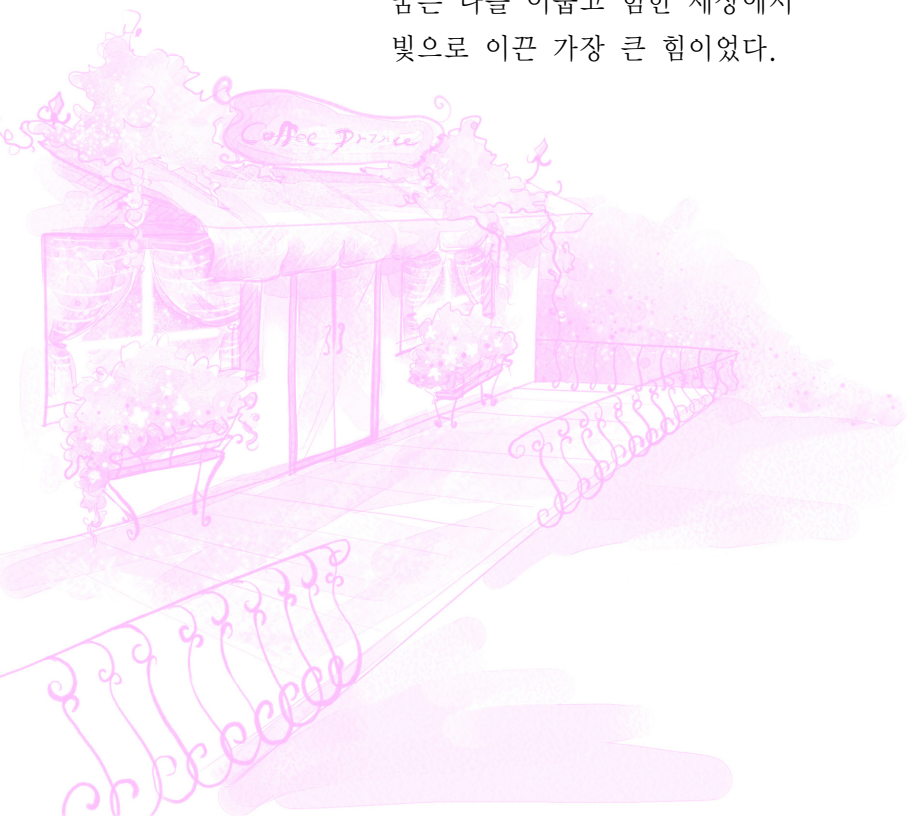
“꿈이 있기에”

나라고 하여

왜 쓰러지고 싶은 날들이 없었겠는가
맨 몸뚱이 하나로 가장 밑바닥에서 부대끼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쓰러지고 싶었고
나자신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버틸 수 있게 했던 힘
그것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긍지였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꿈이었다.

꿈은 나를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빛으로 이끈 가장 큰 힘이였다.



P
A
R
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02 수사의 종결

제 1 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I 수사의 의의

1. 수사의 개념

- ①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와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존하는 활동을 말한다. (10.경찰승진, 13.경간, 16.경찰승진, 17.순경차, 18.해경승진, 20.해경3차, 21.경찰승진)
- ②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하는 것이나 반드시 공소제기 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하거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는 허용된다.
- Tip** 수사 개시 이전의 활동인 내사, 불심검문, 변사자 검시 등은 수사가 아니며, 사인의 현행범체포, 법원의 피고인 구속, 검사의 피고인신문,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의 활동이 아니므로 수사가 아니다.
- ③ 수사는 탄력성, 임기응변성, 기동성, 합목적성, 법률적인 색채의 미약, 당사자주의적 관념 희박, 대상의 다양성과 불예측성 등을 특성으로 한다.
- 주의**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같이 획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 등 합목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X) (21.경찰승진)

2. 내사

내사는 아직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 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하며, 수사가 아니라 수사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내사를 받는 자를 피내사자(용의자)라고 하며 피내사자는 입건(수사개시)에 의하여 피의자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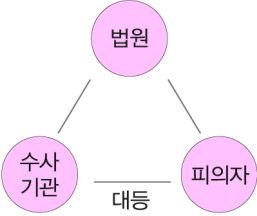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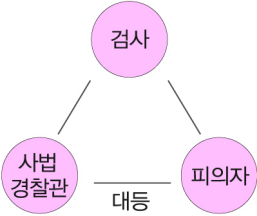
주의 수사이전 단계를 내사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X) (14.순경차, 18.해경승진, 20.경찰승진)

관련판례

내사는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의인지 전에 행해지는 수사기관 내부의 조사활동에 불과하므로, 내사 그 자체만으로는 피내사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내사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가 가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30)

II 수사의 구조

수사과정을 전체 형사절차에서 어디에 위치시키고, 수사절차에서 등장하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피의자, 법관 등 각 활동주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을 말한다.

<p>규문적 (細問的) 수사관</p>	<p>① 수사기관의 고유한 기능 ㉠ 수사절차를 수사기관 중심(규문적)으로 이해 ㉡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불평등 수직관계로 봄</p> <p>② 수사기관의 합목적적 판단 중시</p> <p>③ 영장은 허가장 ㉠ 강제처분은 수사기관의 고유권능 ㉡ 영장은 남용방지를 위한 허가장의 성격 ㉢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이 허용</p>	
<p>탄핵적 (彈劾的) 수사관</p>	<p>① 공판의 준비단계 ㉠ 법원중심적 수사개념 ㉡ 수사를 법원의 재판준비를 위한 활동으로 이해 ㉢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대등한 관계이다.</p> <p>②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억제</p> <p>③ 영장은 명령장 ㉠ 강제처분은 법원의 고유권한 ㉡ 영장은 법원의 명령적 성질 ㉢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은 불허</p>	
<p>소송적 (訴訟的) 수사관</p>	<p>① 공판절차와는 별개 ㉠ 수사를 공판과는 별개의 절차로 이해 ㉡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독자적 목적을 가진 절차</p> <p>② 수사절차의 독자성과 중요성 강조</p> <p>③ 대립하는 소송구조 ㉠ 수사절차의 소송구조화를 도모 ㉡ 판단자인 검사를 정점으로 피의자와 사법경찰관은 당사자로서 대등한 수사의 주체가 됨</p>	

수사
기초

TIP

- 수사절차는 공판 전(前)의 절차이지 공판절차는 아니므로 공판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탄핵주의나 소송구조가 수사절차에 적용될 수는 없다.
-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헌법적 형사소송에 근거하는 것이지 수사구조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판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도1247) (→ 공소기각판결) (10.순경2차, 11.순경1차·2차, 12.경찰승진, 13.법원, 14.경찰승진·경간, 15.경찰승진·9급국가, 16.순경2차·지능특채·9급국가·해경3차·해경간부·소방간부, 17.북부여경·경찰특공대·경찰승진·법원·해경2차, 18.해경특채1차·해경간부·소방간부, 19.순경1차·해경승진·해경간부, 20.9급개론, 21.소방간부, 22.순경1차·해경승진, 23.해경승진)

Tip **甲의 메스암페타민 매수 공소사실과 乙의 메스암페타민 수입 공소사실과 관련, 원래 중국까지 가서 메스암페타민을 구해 올 생각이 없었는데도 검찰 마약수사주사 A와 제보자 B의 함정수사를 위한 '작업'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를 일으켜 범행에 이른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16.해경3차)

주의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이러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17.9급국가, 23.경찰승진)

주의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될 수 있다. (×) (19.순경1차·경찰특공대·해경간부, 24.해경승진·해경간부)

주의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10.9급국가, 11.경찰승진, 14.순경1차, 15.순경2차, 16.경찰승진, 17.법원·해경승진·해경간부, 18.9급개론·경간·해경2차·해경승진, 19.순경2차·해경승진, 20.경찰특공대·해경3차, 22.해경간부, 23.해경3차·해경승진)

주의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17.소방간부, 20.소방간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도1066) (11.순경1차, 13.경간, 16.순경2차·지능특채·해경간부, 17.경간, 18.해경승진, 20.해경승진, 22.경찰특공대)

주의 판례에 의하면 함정수사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사방법만을 의미한다. (×) (17.해경승진)

주의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검거한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15.경찰승진, 22.순경1차·해경승진)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대법원 2007도1903) (11.경찰승진, 14.순경1차·경찰승진, 15.순경2차·경찰승진, 16.순경2차·지능특채·경찰승진·7급국가·경간·해경3차, 17.북부여경·경찰특공대·경찰승진·경간·해경승진, 18.법학특채·경간·해경승진, 19.순경2차·해경승진·해경간부, 20.경찰특공대·해경승진, 21.경찰특공대·경찰승진·해경승진·소방간부, 22.경찰특공대·해경승진·해경간부, 23.법학특채·해경승진·해경간부)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후 검거한 경우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도4532) (16.경간·해경3차, 17.북부여경·경찰특공대·경간, 18.법학특채, 21.경찰특공대·경찰승진·소방간부, 22.순경2차·7급국가·해경승진, 23.경찰승진, 24.해경승진·해경간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 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도3164) (10.경찰승진, 11.경찰승진, 14.경찰승진, 15.순경2차, 17.순경1차·경찰승진, 18.법학특채·경간·해경2차·해경승진·소방간부, 19.순경2차·해경간부, 20.경찰특공대·해경1차·해경승진, 21.경찰승진·해경승진·소방간부, 22.경찰특공대·7급국가·해경승진·해경간부, 23.해경승진)

[1]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자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1.순경1차, 16.해경간부, 18.9급개론·소방간부, 20.순경1차, 21.해경승진, 24.해경승진)

[2]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 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도2339) (10.경찰승진, 11.순경1차, 14.순경1차, 16.해경간부, 17.경찰승진·경간·해경간부, 18.해경승진, 20.해경승진, 21.경찰승진·해경승진·소방간부, 22.7급국가, 23.경찰승진·해경승진·해경간부, 24.해경간부)

Tip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18.소방간부, 22.순경1차)

Tip 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라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관련이 없는 자가 범의를 유발한 경우까지 위법한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 (16.소방간부)

Tip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인(私人)이 피고인에게 범죄의 실행을 부탁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8.9급개론)

주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거나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유인자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될 수 있다. (X) (09.순경2차, 10.순경2차, 11.순경2차·경찰승진)

주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X) (14.경찰승진·7급국가, 15.순경2차, 16.지능특채·경찰승진, 18.법학특채·경간·해경2차·소방간부, 19.순경2차·해경승진, 20.경찰특공대·해경1차, 21.경찰특공대, 22.해경간부, 23.해경승진)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乙이 丙에게, 丙은 丁에게 순차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丁을 체포한 사안에서 乙, 丙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丁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도7680) (11.순경2차, 12.경찰승진, 16.7급국가·경간·해경3차, 17.북부여경·경찰특공대, 20.해경1차, 22.순경2차·해경승진)

피고인이 2005. 5. 25. A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고, 같은 달 28. 18:00 무렵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는바, A가 같은 달 29. 위 사실을 검찰에 신고하여 위 피고인이 체포되도록 한 경우, A가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하도록 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유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등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2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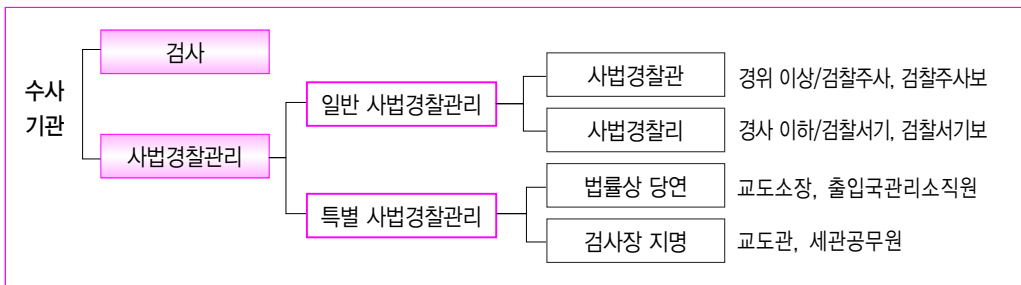
제 2 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I 수사기관

1. 의의

- (1)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 (2)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있다.

2. 종류



수사
기관

(1) 검사(제195조)

- ① 현행법상 검사는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재판의 집행기관이다.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의 주체, 즉 수사의 주재자이다. ②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③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송치요구), 제198조의2 제2항(위법한 체포·구속에 따른 검찰송치 명령) 및 제245조의7 제2항(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른 검찰송치사건)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Tip 체포·구속장소의 감찰결과 피의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데, 이 송치요구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23.경철승진) ④ 검사의 수사 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23.순경2차)
소추기관으로서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소를 제기·수행하는 공소권의 주체이다.(기소독점주의)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소방간부)

- ②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준사법기관인 단독제 관청이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22.해경간부)

참고하기

검사의 수사 범위(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 중요 2대 범죄

- (1) **부패범죄**로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 (2) **경제범죄**로 생산·분배·소비·고용·금융·부동산·유통·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2.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3. 위 1, 2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검사의 사건 이송(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 ①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1. 법 제197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때
 - 2. 그 밖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
- ③ 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해야 한다.
- ④ 검사는 제2항 제2호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

(2) 사법경찰관리(제197조)

그 임무와 권한이 **지역적, 사항적으로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제한을 받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분한다. (19.법학특채)

주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행정관청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X)

① 일반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	㉠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20.해경3차) ㉡ 검찰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마약수사주사보 Tip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제245조의9 제1항) (24.해경승진) ㉢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 (20.해경3차) Tip 경찰청, 해양경찰청 근무하는 경무관 제외(경찰공무원법 부칙 제6조)
사법경찰리	㉠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 검찰서기·검찰서기보(검찰청법 제47조 제1항), 마약수사서기·마약수사서기보 ㉢ 경사·경장·순경

수사
기관

TIP 사법경찰관사무취급

1. 의미
 사법경찰리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수사명령을 받으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인정되는데 이를 실무상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라고 한다.

2. 조서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에 의하여 사법경찰 관리가 검사 등의 지휘를 받고 조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81도1357)
주의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조서는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이다. (X)

관련판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산림보호서기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인 산림계장의 지시에 의하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긴급구속하려다가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64도740)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검사등의 지휘를 받고 조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81도1357)

사법 경찰 관리	<p>① 소속관서의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 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관할 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경찰수사규칙 제15조)</p> <p>② 사법경찰관리가 관할 구역 외에서 수사를 하거나 관할 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0조) (16.해경간부)</p> <p style="background-color: #fce4ec; padding: 2px;">주의 관할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9.법학특채)</p> <p>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별도로 지정된 구역과 직무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p>
----------------	--

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일반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 상호 협력관계(개정법 제195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1항) (24.경간)

Tip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제245조의9 제2항)

Tip 일반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며 1차적 수사종결권이 있는 반면 검찰청 직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에 대해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3.소방간부)

주의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19.순경2차, 21.해경2차·해경승진)

(2) 영장신청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제197조의2)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20.해경3차, 21.해경승진, 22.경찰승진·해경승진)

Tip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주의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4.해경승진)

②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Tip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위 단서에 따라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수사준칙 제60조 제2항)

③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97조의2 제2항) (20.해경3차, 22.경찰승진·해경승진, 23.해경승진)

Tip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수사준칙 제60조 제3항)

Tip 사법경찰관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60조 제4항)

주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면 충분**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다. (×) (23.경찰승진)

경찰수사권 조정론(수사구조개혁)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나 실제상으로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독립한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 하자는 주장으로,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찬성론	① 대량의 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0.순경2차) ② 검사는 법률전문가이지 수사의 전문가는 아니다. (10.순경2차) ③ 검찰이 공소권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독점하는 것은 권력집중의 문제가 있다. ④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가 일원적인 체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10.순경2차)
반대론	① 경찰수사권 독립은 적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에 충실하기 어렵다. ② 경찰권이 비대화하여 남용될 우려가 크다. ③ 경찰의 자질향상 내지 전문화, 인권의식 향상, 자치경찰제 실시 등의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기상조) (10.순경2차)

참고 하기

수사중지 명령과 교체임용 요구권

-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54조 제1항) (15.9급국가, 18.해경2차)
주의 서장을 포함한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그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
- 교체임용 요구가 있는 때에 임용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교체임용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54조 제2항) (15.9급국가, 18.해경2차)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국가정보원 포함)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98조의2) (17.순경1차, 18.해경2차, 19.해경승진, 24.해경간부)
-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주의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4.해경간부)
주의 불법체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는 체포된 자를 24시간 이내에 석방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주의 불법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감찰을 구하는 청구권이 인정된다. (×)

P
A
R
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제 1 절 증거법 일반

I 증거의 의의

증거	형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에 사용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라 한다.
요증사실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말한다.
입증취지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말한다.

II 증거의 종류

1.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증거방법	① 증거로 사용되는 유형물 자체, 즉 증거조사의 대상물을 말한다. ②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18.해경승진, 19.해경간부), 의사의 상해진단서(18.해경승진, 19.해경간부), 공판조서(18.해경승진), 피고인 등 Tip 피고인의 신체는 증거방법이 되기도 한다. 주의 피고인의 진술 (x) (18.해경승진)
증거자료	①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 그 자체를 말한다. ② 증인의 증언(19.해경간부), 감정인의 감정결과, 증거물의 성질·형상, 증거서류의 의미내용, 피고인의 자백 등

Tip 증거방법으로부터 증거자료를 획득하는 절차를 증거조사라고 한다.(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2. 본증과 반증(거증책임 부담에 따른 분류)

본증	① 거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말한다. ② 현행법상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Tip 피고인이 거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본증이 된다.
반증	거증책임을 지지 않는 자가 본증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말한다.

4.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실질증거	①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간접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 ② 증인의 증언
보조증거	①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 ② 증인의 약한 기억력에 관한 증언 ③ 증명력을 증강하기 위한 증강(보강)증거와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탄핵증거

5.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진술증거		①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되는 것으로 진술과 그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포함한다. ②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원본 증거	사실을 체험한 자가 중간의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증거로 본래증거라고도 한다. Tip 범죄현장을 목격한 진술은 직접증거이면서 본래의 증거이다. (12경간)
	전문 증거	직접 체험한 자의 진술이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의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 Tip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자술서 (21해경2차)
비진술 증거		① 진술증거 이외의 증거, 즉 단순한 증거물이나 사람의 신체상태 등이 증거로 되는 것 ②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Tip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의 구별은 전문법칙 적용여부에서 의의가 있다.

증거
기초

6. 인증, 물증, 서증

인적증거	① 사람의 진술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 ②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등 ③ 인적증거에 대한 조사는 신문 의 형식에 의한다.
물적증거	① 물건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 ② 범행에 사용된 흉기, 절도죄의 장물, 위조문서, 무고죄의 고소장 등 ③ 물적 증거에 대한 조사는 검증 의 방법에 의한다.
증거서류	① 서면의 의미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 ②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는 낭독(요지의 고지) 의 방식에 의한다. Tip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을 합하여 서증이라고 한다.

III 증거능력과 증명력

1. 증거능력과 증명력

증거능력	①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② 미리 법률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 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서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의 제약을 받는다. (X)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② 자백배제법칙 ③ 전문법칙 주의 자백보강법칙 (X) (10.교정특체)
증명력	① 증거의 실질적 가치 ②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 에 의한다. (자유심증주의, 제308조)
	① 자유심증주의 ② 자백보강법칙 ③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관계	① 엄격한 증명에 있어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증명력을 따져볼 필요가 없다. Tip 엄격한 증명에 있어서 증거능력은 증명력 판단의 전제가 된다. Tip 엄격한 증명에 있어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거조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 증거능력 없는 증거라도 증명력이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X)
	②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강하다고 하여 언제나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할 뿐이고, 당해 증거가 가지는 실질적 가치인 증명력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비록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의 문제 즉 증명력의 유무는 오로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것이어서 피고인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그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으므로 어떤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와 그에 의한 요증사실의 증명 내지는 범죄사실의 인정과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헌법재판소 93헌바45)

2. 증거능력 있는 증거

비진술증거	적법성 → 증거능력 인정	
진술증거	원본증거	적법성 → 증거능력 인정
	전문증거	① 원칙 - 전문법칙(제310조의2) → 증거능력 없다. ② 예외 - 적법성 + 제311조~제316조 → 증거능력 인정

제 2 절 증명의 기본원칙

I 증거재판주의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의의	① 증거재판주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실제진실발견을 위한 증거법상의 기본원칙이다. (11.경찰승진, 17.해경간부, 20.경찰승진) Tip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제307조 제1항) ② '사실'이라 함은 범죄될 사실을 의미하고, 그러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지	사실인정을 자백에 의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 역사적 의미 뿐만 아니라 범죄될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

관련판례

소송관계인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 제출하였을 뿐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거나 공판정에서 이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서류들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도70)

2. 증명(사실의 인정)

의의	증명이란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경찰승진)
소명과 구별	① 소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진실할 것이다'는 추측을 갖게 함으로써 충분한 것을 말한다. ② 소명의 대상은 특별히 법률에 정해져 있다.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사유 ㉡ 상소권회복청구사유 ㉢ 국선번호인 선정 청구사유 ㉣ 증언거부사유 (22.순경차) ㉤ 증거보전청구사유 (22.순경차) ㉥ 증인신문청구사유 (22.순경차) ㉦ 기피사유 ㉧ 체포영장의 갱신사유(규칙 제96조의4) 주의 고소의 유무 (X), 고소사유 (X)

Tip 증명불필요 - ① 공지의 사실 ② 추정된 사실 ③ 거증금지 사실(초소송법적 이익 - 공무상비밀)

주의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X) (21.7급국가)

증거
기초

3. 증명의 방법(피고인 보호와 소송경제 조화)

엄격한 증명	① 법률상 증거능력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 증명 (15.법원, 17.해경간부) ②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사실, 즉 주요사실이 그 대상이 된다.
자유로운 증명	① 증거능력 없는 증거 또는 증거조사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해 증명 (22.순경2차) Tip 법원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된 서류나 전화에 의하여 확인한 증거에 의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주의 자유로운 증명의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X) ② 자유로운 증명의 경우에도 법관의 확신을 요한다. (11.경찰승진)

Tip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양자는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22.순경2차)

4.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공소범죄사실 (15.법원, 18.해경2차)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로서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구성요건 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가를 불문하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16.해경간부, 22.법학특제)	
	객관적 구성요건	① 행위의 주체 (16.해경3차), 객체, 행위, 결과의 발생, 인과관계 ② 야간주거침입에서 일출·일몰시각 Tip 교사범에 있어 교사의 사실
	주관적 구성요건	① 고의, 과실, 목적 Tip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면탈할 목적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공모, 불법영득의사 등

증거 기초

관련판례

범죄단체의 구성, 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 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도4370) (11.경찰승진, 12.해경간부, 16.소방간부, 17.해경간부)